

- 첨 부 -

▷ **교육과정명:** 『미국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절차 및 대응방안』

▷ **교육 기간:** 2009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장:** 크레듀캠퍼스 C룸(지하철 시청역 10번출구, 도보3분)

▷ **교육비:** 220,000원 (교재, 중식, 부가세 포함)

▷ **대상:** 변호사, 기업법무부서, 전략기획부서, 총무부서, 해외(미국)투자부서, 해외(미국)영업부서, 해외(미국)파견 법인·지사·부서, 경영진, 수출입(미국) 관련 Business를 하는 자 등

▷ **주최기관:** (주)로앤비

▷ **교육특징:**

-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부딪치게 되는 법률분쟁 해결 최적 지침서
- 미국 내 정상급 소송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전 경험 전달 강의(**Top 5 Attorneys** of Securities Arbitration in US in 2001 선정)
- 15년간의 미국 소송, 자문 경험을 통한 이론 중심이 아닌 생생한 비즈니스 사례 중심의 강의
- 한국기업의 경영진 및 법무조직이 미국 현지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사법시스템 및 재판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된 분쟁의 유형별 분석 및 분쟁 사전 사후 대처방안
- 현지 계약 체결 및 계약위반 유형별 사례 분석
- 한국과 미국의 소송절차 비교 강의
- Q & A을 통한 미국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 가능

▷ **교육개요:** 1990년대까지는 한국기업이 미국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대기업 정도만 소송대응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미국수출 또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에 들어오면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재산 및 비즈니스를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소송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며 이에 미국 소송 절차와 함께 미국 소송에 처한 한국기업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내용:

1. 미국 소송의 특징

- 1) 관할권: 연방 / 주 법원
- 2) 통상적인 소송의 비용과 소요시간
- 3) 미국에서 한국기업 기업활동을 하면서 진행된 분쟁의 경향

2. 소송의 준비단계

- 1) 승소가능성의 판단 및 증거의 확보
- 2) 가압류 / 가처분의 미국에서의 활용 가능성
- 3) Demand Letter 등의 활용방안
- 4) 변호사 선임
- 5) 한국에서 소송의 준비단계와 차이점

3. 소송관련 기초지식

- 1) 미국 소송 절차의 개관 (한국 소송 절차와 비교)
- 2) 용어의 정의
- 3) 연방 / 주법원 / 하급법원 등의 차이
- 4) 법정 예절
- 5) 한국 법정과의 차이점

4. Initial Stage(초기단계)

- 1) 원고의 소장 제출 및 송달 민사 소송을 당했을 때
- 2) Answer
- 3) Default Judgment의 효력
- 4) 민사소송상 시효
- 5) 피고의 대리인 선임
- 6) 법원 주체의 Conference 및 소송진행 절차 합의
- 7) 분쟁 쟁점 및 소송 진행 여부 대한 검토

5. Pleading Stage(변론단계)

- 1) 피고의 반대 Motion 제출
- 2) 피고의 Answer & Counter Claim 제출
- 3) 원고의 피고 Answer에 대한 Reply & Counter Claim에 대한 Answer
- 4) 피고의 원고의 Reply에 대한 Rebuttal 제출

6. Discovery Stage(증거개시절차)

- 1) 개요
- 2) Initial Discovery Disclosure(초기정보공개)
- 3) Document Request(자료요청)
- 4) Interrogatories(심문조서)
- 5) Deposition (증언)
- 6) Request for admission(승인요청)

7. Pretrial Stage(재판 전 단계)

- 1) Summary judgment(약식 재판)
- 2) Pre- trial Conference (공판 전 회의)
- 3) Pretrial Order (공판 전 법원명령)
- 4) Trial 전 마지막 준비

8. Trial, Decision and Appeals(공판, 판결, 항소)

- 1) Trial(재판)
- 2) Trial 후 대응 방법 (원고 / 피고)
- 3) Decision(판결)
- 4) Appeals(항소)
- 5) 판결에 따른 집행 방법(Enforcement)

9. Settlement와 Arbitration & MEDIATION

10. 사법공조

- 1) 형사적 사법공조
- 2) 민사적 사법공조: 한국에서의 판결이 미국에서 영향력 / 집행 등의 문제를 확인

11. CASE STUDY – I.E. I WILL TALK ABOUT A DIFFICULT CASE THAT WE HAD.

12. QUESTIONS AND ANSWERS TO THE EXTENT NOT BREACHING ATTORNEY-CLIENT PRIVILEGE

▷ **강사소개:**



▪ **B.J. Kim (김봉준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School of Business-Ann Arbor in 1986(B.B.A)
- Syracuse College of Law in 1992(J.D)
- Kim & Bae Attorney at law 공동설립자
- 미국 뉴욕주 & 뉴저지주 변호사
- 전문분야: 국내 및 국제 상거래 / 상법 소송 / 계약 / 기업인수 / 명예훼손 / 부동산 / 회사설립 등
- 주요 소송: 뱅크오브차이나 (Bank of China) / 벤자민 무어 앤 코 (Benjamin Moore & Co.) / 팬아시아 은행 (Panasia Bank) / 우리 은행 / 현대 증권 America / 워너 브라더스 트리뷴(Tribune Company of Warner Brothers Entertainment) /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 그로웰(Growell Corporation)



▪ **Christine M. Bae (배문경 변호사)**

- Psychology from St. John's University, 1991 (B.A)
- Jacob D. Fuchsberg Law Center of Touro Law School in 1994 (J.D)
- Kim & Bae Attorney at law 공동설립자
- 미국 뉴욕주 & 뉴저지주 변호사
- 전문분야: 증권중재(재정서비스 & 투자은행, 투자자-브로커 관계) / 국제 상법 (특히 한국과 미국간 사업거래) / 계약법
- 회원: 전미증권업협회(NASD) & 뉴욕증권거래소(NYSE) 중재 판사 / 미국변호사협회(ABA) / 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2003~2006)
- 주요 소송: 유비에스(UBS) / 페인웨버(Painewebber, Inc.) / 씨티그룹(Citigroup) / 메릴린치, 피어스, 페너 앤 스미스 인코포레이티드(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 푸르덴셜증권(Prudential Securities, Inc.)